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즉시강제 도입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정비〉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54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즉시강제 도입	3
2. 재난안전보험 권고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정비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27.
3. 회부연월일 : 2025. 2.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서는 시정 명령 등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소·고발로 이어져 단속 공무원의 업무 기피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옥외광고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물등으로 인해 생명·신

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 안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Ⅲ. 검토의견

1. 즉시강제 도입

개정안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불법인 옥외광고물등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시정 명령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 ----- ----- ----- ----- 대하여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시장등은 옥외광고물 등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게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하고, ②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 →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납부명령’의 절차를 거쳐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③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상 계고나 영장통지 등 사전절차를 거치면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두어,¹⁾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등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적인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확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거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즉시강제’가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상 강제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강제하여 이행하거나 실현하도록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급박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행정상 즉시강제’로 구분되는데,²⁾

「행정기본법」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상 강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 행정상 강제의 종류를 예시하고 있음.³⁾

2)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5.

3)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③ (생략)

개정안은 시장등의 조치명령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 의무 및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현장에서 광고물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즉시강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 단속 공무원을 보호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불법인 광고물등을 신속히 제거하여 국민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시정명령 등 사전에 의무를 부과함이 없이 광고물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즉시강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즉시강제는 ①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②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⁴⁾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직접 실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4)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③ (생략)

즉시강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⁵⁾

예를 들어, 광고물등이 법 제3조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광고물등을 제거하라고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조치명령을 한 뒤에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생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⁶⁾

둘째, 개정안은 사실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면서도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의 취지는 행정대집행의 ‘절차’⁷⁾를 생략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등의

5) 「행정기본법」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6)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은 주로 정당 현수막이나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 개정의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7) 행정대집행은 ‘계고 → 통지 → 실행 → 비용납부명령’의 절차를 거침.

관리자등에게 광고물등을 제거해야 하는 작위의무를 부여하여 법 제 10조제2항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법령이나 행정처분에 의한 구체적인 의무 부과와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나, 즉시강제는 선행 의무 부과 및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즉시강제는 예외적인 강제수단으로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행정대집행의 특례’가 아닌 별도의 조문에서 다루거나 조 제목을 ‘행정대집행 등의 특례’로 변경하고 그 발동요건이나 절차 등을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⁸⁾

참고로,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인공구조물 등이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어 조치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즉시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8)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즉시강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 행정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도록 법령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23-0186)

9) 「도로교통법」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地上)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협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투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생략하여 현장 단속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재난안전보험 권고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정비

개정안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규정하여 광고물등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 안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u><신설></u>	④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략) <u><신설></u>	제20조(과태료) ①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2. 제1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옥외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현행	개정안
2. (생략) 4. 5. (생략) ② ③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5.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¹⁰⁾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광고물등의 제작이나 표시,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게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¹¹⁾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 13. (생략)

재난안전의무보험은 개별 법령에 따라 도입되어 현재 총 58종이 운영중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체계의 일관성·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보상 한도, 가입의무자 관리 체계, 가입 유도, 보험 계약 거부 등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 개요

- (관련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 (가입 대상) 옥외광고제작업자, 옥외광고대행사업자
 - * 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가입대상 광고물)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등
 -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등 17종
- (보상한도) 사망 또는 휴유장애 1인당 1.5억
상해 및 재산손해 1인 또는 1사고당 3천만원
- (미가입자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가중)
 - * 미가입기간 30일 이하(1~10만원) / 30일 초과 90일이하(10~70만원) / 90일 초과(70~500만원)

※ 자료 :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① 옥외광고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②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치료나 장애회복, 생계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피해자

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는 보험회사의 영업의 자유에 속하는 고유권한으로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관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대략적인 예측도 불가능하므로 ‘보험회사가 관련 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등 거부가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 외에도 법률 간의 체계적 적합성 및 일관성의 관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계약 ‘체결’의 거부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함께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²⁾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2.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것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입법례>

「주차장법」

제19조의16(보험 가입) ①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수업자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종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가입을 게을리 한 자 또는 가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입의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7.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나, 경기도는 「옥외광고물법」이 아닌 「보험업법」에서 일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별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괄 규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50

참고

재난안전의무보험 종류

분야	보험명	근거법률
화재폭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운송 (육상·해상)	궤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궤도운송법」 제26조
	기계식주차장보수업배상책임보험	「주차장법」 제19조의16
	낙시어선업 배상책임보험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 제11조
	마리나업자배상책임보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운전학원종합보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2조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항공보험(경량항공)	「항공사업법」 제70조
	항공보험(대형항공)	「항공사업법」 제70조
	항공보험(드론)	「항공사업법」 제70조
근로자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선원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	「선원법」 제106조
	선주배상책임보험	「해운법」 제4조의3
	수상구조사 등 피해보상보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9
	스마트혁신 실증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분야	보험명	근거법률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해양특수경비원 무기사용손해보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6조
환경	규제특례사업자손해배상책임보험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신재생에너지배상책임보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의2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우너지력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5조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등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공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산후조리원배상책임보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청소년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교육체육	생활체육안전보험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사업 손해배상책임보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실증특례손해배상책임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실증특례손해배상책임보험 (중소기업벤처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88조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	「관광진흥법」 제9조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1조
	연구실안전공제	「연구실 안전법」 제26조
	유원시설업배상책임보험	「관광진흥법」 제9조
	지정스포츠클럽피해보상책임보험	「스포츠클럽법」 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학원배상책임보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레저동물	낙시터업배상책임보험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 제11조

분야	보험명	근거법률
	맹견배상책임보험	「동물보호법」 제23조
	수렵·포획 배상책임보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수상레저 종합보험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
	승마시설피해손해보험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배상 책임보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보건	공유주방사고배상책임보험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기부식품등취식사용 피해손해보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환자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료기기책임보험	「의료기기법」 제43조의6